

서울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나2015271 판결 [보증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나201527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4가합58967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그랑블제주알앤지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1. 건설공제조합

2. 서진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 종결2016. 9. 30.

판결 선고2016. 11. 11.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4가합58967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7행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10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 A(이하 감정인이라 한다)"로, 16행의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으로, 제4면 21행부터 제5면 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감정인은 방수층 유실구간이 보수되지 않았거나 추가 방수층의 유실로 2012년경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2010. 7. 14. 발생한 방수층 유실구간이 보수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 후 추가로 방수층이 유실된 것인지 그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감정인은 2012년경 하자가 발생한 위치를 명확하게 특정하지는 않았으나(명시적으로 제시된 자료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2010년경 피고 회사에서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한 위치는 이 사건 폰드의 맨홀 주변으로 평수위와 만수위의 중간 부분인데, 2012년경 하자가 발생한 위치는 위 보수공사가 실시된 위치와는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나. 감정인은 2015년 6월 및 7월경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인입관 변형으로 인한 벤토나이트 혼합층 유실 및 식물뿌리와 지중생물의 벤토나이트 혼합층 침입으로 인한 누수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가 피고 회사에 하자보수의 이행을 요청한 시점부터 거의 3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감정이 이루어진 점, ② 감정인도 이 사건 폰드의 하자 발생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그밖에 감정인은 인입관 변형

발생시기와 원인 분석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고 회사의 시공상 과실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식물뿌리에 의한 방수층 침입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시공상 과실과 원고의 관리 소홀로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③ 원고는 2010년에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인입관 변형에 의한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하여 보수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하자가 2010년 7월경 이미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과 가장 가까운 서광관측소의 관측결과를 참조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골프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서광, 한림, 고산, 유수암 등 4곳의 관측지점 평균치를 고려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강수량을 추정하여야 하는데, 2011년 8월경에는 이 사건 골프장에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아 강수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폰드의 누수 하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 2012년 8월경에야 이 사건 골프장에 합계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 이 사건 폰드의 누수 하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감정인은 고산기상대의 강수량이 이 사건 골프장과 지역적으로 더 가깝고 유사한 지형에 위치하는 서광관측소, 유수암관측소의 관측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고산기상대의 관측결과를 이 사건 골프장의 강수량으로 추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제주기상대의 관측결과와 이 사건 골프장 주변인 서광관측소 및 유수암관측소의 강수량을 참조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강수량을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② 제주도의 각 관측 지점별 강수량은, 2010. 7.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제주 179.5mm, 서광 162.5mm, 유수암 222.5mm이었고, 2011. 8. 6.부터 같은 달 8.까지 제주 322.5mm, 서광 161.5mm, 유수암 304.5mm이었으며, 2012. 8.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태풍 덴빈과 볼라벤의 영향으로 제주 571mm, 서광 522.5mm, 유수암 661mm이었던 점, ③ 유수암관측소는 이 사건 골프장과 같이 한라산에 비교적 근접해 있는 반면 서광관측소는 한라산과 떨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1년 8월 당시 이 사건 골프장에 약 300mm의 호우가 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011년 8월 당시에는 이 사건 폰드에 누수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2010년 7월에 발생한 하자가 제대로 보수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호우가 내렸을 경우 누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가사 2011년 8월 당시 이 사건 골프장에 약 300mm의 호우가 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주, 서광, 유수암관측소 세 곳 모두 위 2011년 8월의 강수량이 위 2010년 7월의 강수량보다 많았거나 비슷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10년 7월에 발생한 하자가 제대로 보수되지 않았다면 2011년 8월에도 같은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인데 2011년 8월에는 별다른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배형원

판사이승철

판사최영락